

#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합의결과서

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2,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공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남 거제시 상동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사 장소(주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68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사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동주택 ( V ) 건축물( ) 도시철도(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건축주 제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옥외안테나 설치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옥상층 : 101동, 103동, 105동, 106동, 109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계장치 설치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옥상층 : 101동, 103동, 105동, 106동, 109동<br>2. A블럭 지하2층(EL+51.0) : 헬룸(2개소)<br>3. B블럭 지하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접지단자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(총용량4kW 이상, 교류 220V, 단자 3개 이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공동주택(500세대 이상)에 대한 사업주체의 합의결과 게시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※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,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합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(변경)승인서 사본 1부 제공<br>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(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)<br>③ 건축물의 착공/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|
| 5.기타 합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"상세 합의 결과"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건축주는 "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"의 제 35조~39조를 준수하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※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,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
[첨부]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.

상기 합의내용 이외의 것은 "전기통신사업법", "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"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음.

2025년 09월 17일

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구분  | 법인/단체명(상호)         | 대표자(성명)       |
| 건축주 | (주)한국토지신탁          | 김성진           |
| 대리인 | (주)에다종합설계감리사<br>무소 | 이유상<br>(인)동의함 |

기간통신사업자 합의대표

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 
만 국 전 파 진 용 열 화

